

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100129-14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2026. 3.



해양수산부

CONTENTS |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I. 공유수면의 의의	1
1. 공유수면의 의의	3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9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11
II. 공유수면 관리	13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15
2. 공유수면 관리청	15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17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7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49
6. 기타 사항	56
III. 공유수면 매립	59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61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66
3. 공유수면 매립면허	74
4. 공유수면 매립공사	91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101
6. 기타 사항	111

IV. 기타 참고사항 **121**

-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123
-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134
- 3. 기능을 상실한 공유수면의 용도폐지 142
- 4. 그 외 주요 참고 사항 146

V. 부록 **155**

- 1. 공유수면관리법의 제·개정 연혁 157
- 2. 공유수면매립법의 제·개정 연혁 162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골자 167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개정 연혁 168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I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의의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약어 안내

- ‘공유수면법’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공유수면 관리 규정’이란 공유수면법 제2장(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함
- ‘공유수면 매립 규정’이란 공유수면법 제3장(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규정을 말함
- ‘업무처리규정’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말함
- ‘법, 영, 규칙, 규정’은 공유수면법령과 업무 처리 규정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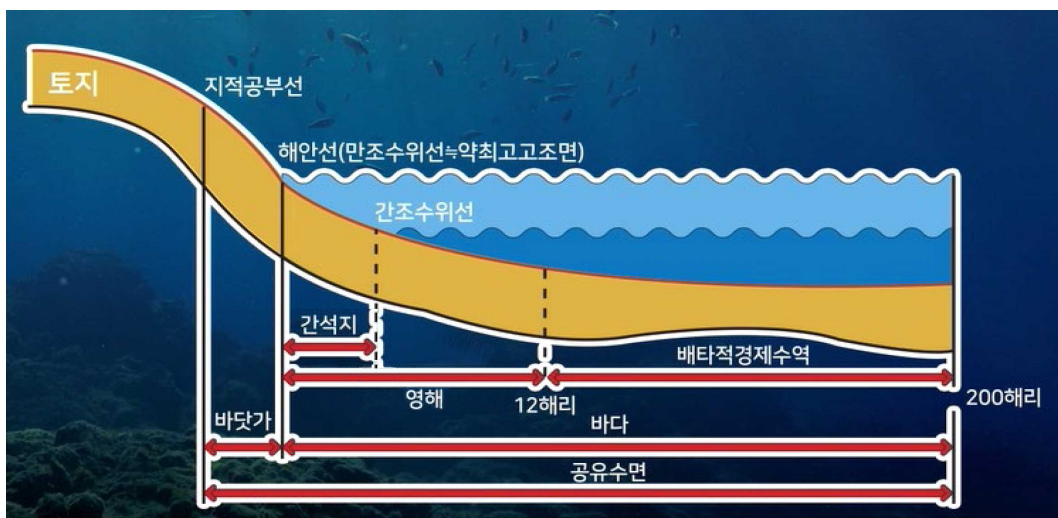
01 공유수면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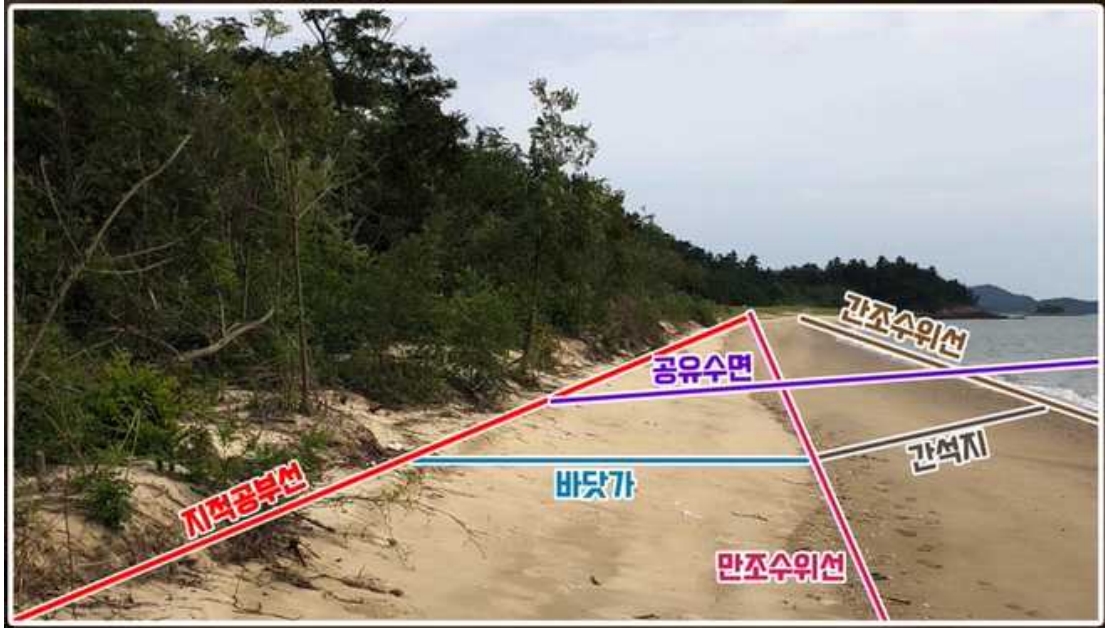
가. 공유수면의 정의

-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

▶ 바다·바닷가

- “바다”라 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 “바닷가”라 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 ※ '99. 8. 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함
 - ※ 바닷가(빈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공유수면에 처음부터 포함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97. 4. 10.부터 공유수면에 포함됨





▶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음
-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규정 적용대상임

※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40판결, 1972. 8. 22. 선고 72다841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판결 참고

- 단, 공유수면 매립은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지변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이므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지 않아도 물이 없어 사실상 토지화된 국유인 하천, 유지, 구거, 바닷가 자체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상의 매립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락지

- “포락지(浦落地)”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국유의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됨

※ 실제로는 공유수면이나 지적공부상 임야 등 토지로 등재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포락지”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이고 공유수면 매립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임야나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매립면허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임.

※ 법에서 정한 포락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임
(시행령 제5조)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구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참고 판례

공유수면 정의 관련

- ① 舊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유수면으로 바다,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 제2조 제2호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 ②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 :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 ③ 빈지(濱地) :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고,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34003 판결)
- ④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공용폐지 관련

- ① [1]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3]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초과한 매립으로 새로 생성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새로 형성된 지형이 기재된 지적도에 그 토지를 포함시켜 지목을 답 또는 잡종지로 기재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법령 해석례 1

Q (질문)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280, 2014. 10. 14.]

A (답변)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 해석례 2

Q (질문)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0-0057, 2010. 4. 16.]

A (답변)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공유수면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규정의 적용 배제

-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 대상 공유수면)
 - ※ '99. 8. 9. 전문개정 된 이후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국유인 하천을 다 같이 공유수면의 범위에 포함하되,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을 적용 받거나 준용되는 하천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 ※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의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 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암반지역 등에 물을 저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홍수면 및 저수부지를 말함),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입보,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함
 - ⇒ 등기부상 소유자가 국(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지개량조합, 한국농어촌공사로 등기되어 있음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대상	적용 법률	적용 배제 사항
하천	「하천법」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소하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항만시설	「항만법」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어항시설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지목이 '구거'인 국토교통부 소유인 부지는 공유수면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이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적용되는' 또는 '준용되는'의 의미

- 「하천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 : 「하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하천구역·하천시설
- 「소하천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 받지 않는 하천으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하천·소하천구역·소하천시설
-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이 '준용'되는 공유수면 : 하천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규정된 하천과 소하천의 정의에 따라 하천과 소하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해당 토지·수면 등의 지형적 조건, 주변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하천구역과 소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관 관리청에서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소하천으로 볼 수 있다고(준용)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을 소관하는 부처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 '준용'이란 특정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5)

▶ 공유수면 매립규정의 적용 배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
- 이는 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구거나 저수지 등을 다른 공공시설로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임
-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0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가. 적용법률

공유수면 관리(제2장)	공유수면 매립(제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규정이자 일반규정임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점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규정이 정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상태를 유지하여야 되고 원상회복이 전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규정이자 일반규정임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 건설부지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함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관리자의 동의 및 매립절차 등도 이 규정에 따름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를 조성,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상실이 전제됨
<p>※ 공유수면 관리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은 피허가자 소유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등기조치 불가)</p>	<p>※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됨</p>

나.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준용하는 행위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 축제식 양식어업은 「수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규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유수면법 제46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축제식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구역은 피면허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 그러나 공유수면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양식장 축조행위는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후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왜냐하면,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하여는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 ☞ 의장안벽, 선가대 등 조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또는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따라 모두 설치가 가능하나, 양 법률의 적용 차이는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있음
- 조력(潮力)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다. 관리 주체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위임),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라. 법률적 권리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관리규정에 의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공유수면 관리규정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며, 시설물은 설치자의 소유임 •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사용면적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매립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는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지로 조성할 권리(소유권 취득)를 설정하여 주는 것임 • 조성된 토지 중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는 피면허자가,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과 잔여매립지는 국가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함 • 매립면허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함

마.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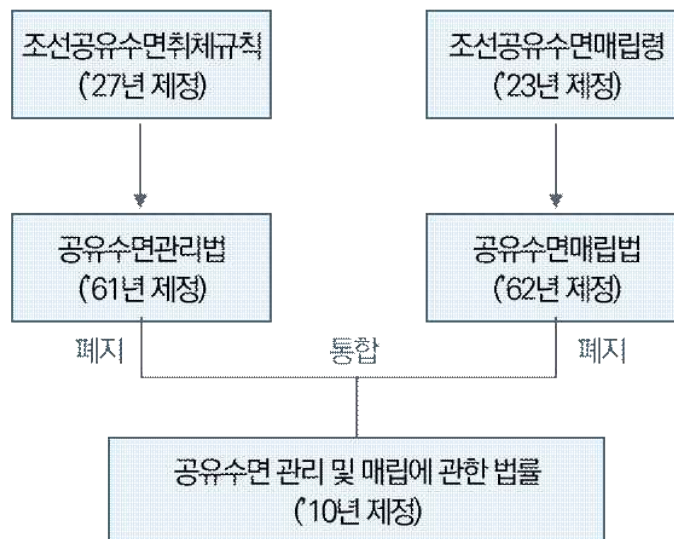
-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공유수면 등에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련기관의 반대가 없어야 함
-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피허가자 등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면허관청이 공히 취소권 등 감독권을 가짐

03 공유수면 관련 법령

가. 공유수면 관련 법령 현황

구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72호) - 제정일 : 2010. 4. 15., 시행일 : 2010. 10. 16.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49호) - 제정일 : 2010. 10. 14., 시행일 : 2010. 10. 16.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00호) - 제정일 : 2010. 10. 15., 시행일 : 2010. 10. 16.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1-490호) - 제정일 : 2011. 9. 6., 시행일 : 2011. 9. 6.

나.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변천



II

공유수면 관리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2. 공유수면 관리청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6. 기타사항

0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함

- 따라서 공유수면의 이용은 공유수면의 보전 및 보호가 먼저 고려되어야 함

02 공유수면 관리청

▶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인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관리청은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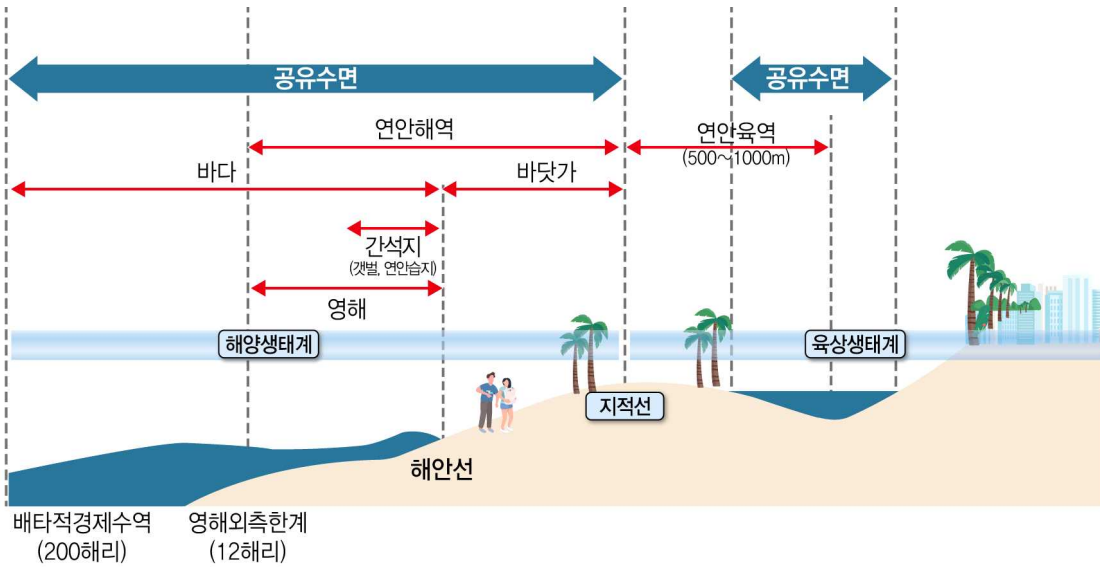
- ✓ 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새만금개발청이 담당하는 구역은 제외

구분	관리청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시행령 제73조)
(1)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3)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지방관리연안항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4) 그 외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은 도지사가 관리함

공유수면의 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 「연안관리법」 제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조면(略最高潮面)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



0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가. 개요

-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우 개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허가” 대신 “협의 또는 승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절차 및 법적 성격은 허가와 동일함
 - 공유수면관리청이자 사업시행자인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도 사업시행부서에서 허가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유수면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개인이 신청한 허가와 동일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함
 - ※ 공유수면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하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부서의 협조만을 받을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로 볼 수 없음
-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대상을 법 제8조에서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점용·사용료를 받는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음
 - 점용·사용 목적은 11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분류하여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의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점용·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 ☞ 물의 인수·배수를 위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와 같이 2개 이상의 점용·사용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제5호에 따라 점용·사용을 허가토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용·사용료는 규칙 별표 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각각 부과·징수함
 - ☞ 공유수면에서 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점용·사용허가 하고 점용·사용료는 규칙 별표 2의 4호에 의거 채취료만 부과·징수함

-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의 법적 성질은 특정인에 대해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

나.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제6조)

▶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 부두·방파제·교량·수문·신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 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 “포락지”라 함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어야 함(영 제5조, 규칙 제4조~제5조)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별지 4호서식]에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

-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을 말함)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한함)
- * ①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②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③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외함
 -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참고 판례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 ① 舊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법령 해석례 3

Q (질문)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요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법제처 11-0067, 2011. 3. 3.]

A (답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요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기준

-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제12조)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여서는 아니 됨
 -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함
 - ☞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과 아울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단순 인접·물리적 거리만으로 권리자를 판단하지 않고 있음

 **권리자의 범위**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권리자의 범위를 규정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재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를 말한다)의 끝으로부터 상가할수 있는 최대선박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제12조)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여서는 아니 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 ※ 대통령령(제12조제2항)이 정하는 공익사업
 -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법령 해석례 4

Q (질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제6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받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법제처 22-0477, 2022. 10. 14.]

A (답변)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면제되는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¹⁾

▶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법 제12조)[2022. 12. 27. 신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 계획과의 부합 여부
 - ①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인 경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시
 - ②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용도구역의 '핵심 활동'과 신청된 점용·사용 목적이 상충되는지 검토
-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1) 이 사안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받은 자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가 없어 새로운 점용·사용 허가 등으로 인해 기존처럼 공유수면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임을 전제함.

②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시행령 제11조의 2[본조신설 2023. 6. 13.]

▶ 점용·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신청이 경합(먼저 접수된 신청서의 법정처리기간 내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함(영 제11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청한 것
-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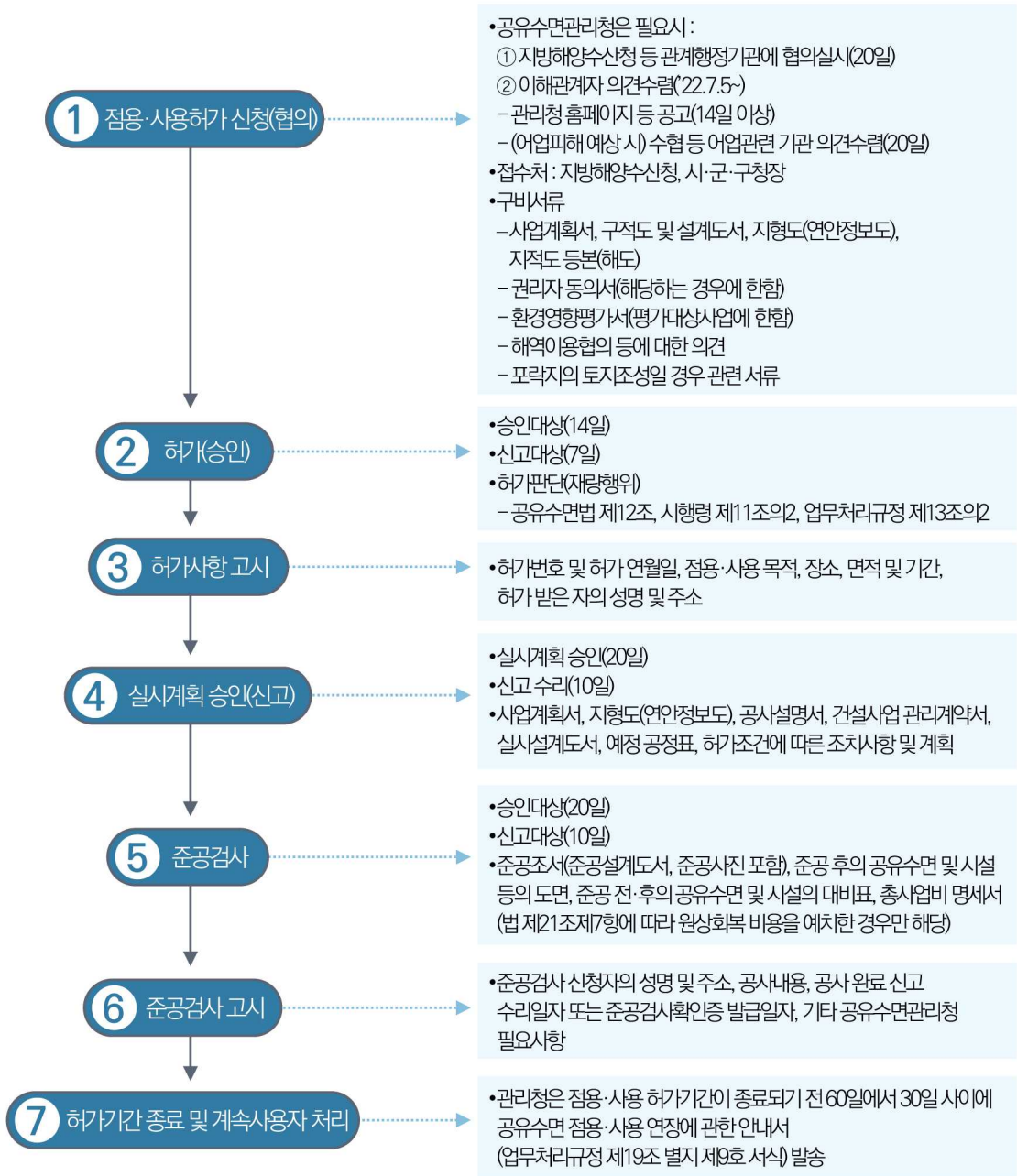
다.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절차

(법 제8조부터 제13조, 영 제4조부터 제13조, 규칙 제4조부터 제11조)

▶ 점용·사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 신청(협의) → 심사 → 협의 → 허가(승인) → 고시 및 기록유지 → 실시계획 승인(신고) → 준공검사 → 준공검사 고시 → 허가의 변경 → 허가 기간 종료 및 계속 사용자 처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신청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신청 위치, 점용·사용의 목적, 사업추진계획(사업비, 공사추진계획), 해양오염 방지 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 존치 기간, 공작물의 원상회복 계획, 모래·규사 등 채취 시는 채취계획량 등
 - ※ 점용·사용의 목적, 규모 등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필요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 설계도서의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 신청 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 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 신청 구역을 표시한 신청 구역 또는 신청 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 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해도).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 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지적측량도의 종류 : 현황측량도, 경계측량도, 분할측량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에는 현황측량도를 첨부하면 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권리자(법 제12조, 영 제12조) 해당 여부 판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수역에 인접한 구역뿐만 아니라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말하나 단순히 인접 또는 인근에 위치하였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가 발생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로 봄
 - 공유수면 관리 규정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목적, 인접토지(공유수면) 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 공유수면 관리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없으나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거나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 법령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별도로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이 경우 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첨부토록 하여야 함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허가(협의·승인)신청 사항의 심사

- 관리청은 우선 법령 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 개발계획 저촉 여부 등을 심사
 - 필요 시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없이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함

▶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 심사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시 유의 사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당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일건서류와 공유수면조사서 및 관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 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항만·어항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충돌이 없는지 관련하여 협의하여야 함
 -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 중 단순 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 대상을 축소할 수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조선소 선가대 설치 및 모래(규사) 채취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함 <개정 2023. 6. 13.>

▶ 점용·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 「골재채취법」·「광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 당해 관리청은 이를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요청기관(부서)에 회신하고 의제처리기관(부서)에서는 이를 허가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 등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는 이를 다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광물인 규사 채취와 무관하게 모래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을 받은 자는 광물(규사)을 채취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의한 해양이용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부정적인 협의의견(부동의)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 협의의견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점용·사용을 불허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일건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기관이 협의의견 제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기술)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함(협의기관에서 협의의견 제출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사진도 함께 송부)

법령 해석례 5

Q (질문)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4-0761, 2015. 3. 9.]

A (답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022.01.04. 신설)

-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 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제출의견의 타당성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출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권리자와 이해관계자의 비교

구분	권리자 (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2조)	이해관계자 (법 제8조제7항, 영 제9조의2, 규정 제14조의2)
제도의 취지	점용·사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자 보호	점용·사용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의견수렴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2.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에 따른 입어자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내수면양식업은 제외) 6. 수산업법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7.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9.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국민 * 공고 및 열람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어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 공유수면관리청은 효율적인 의견 조사를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판단 근거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의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를 검토하여 판단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 단,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외
동의서·의견서 제출기관	해당 공유수면관리청	해당 공유수면관리청, 수협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용·사용허가 내용(피허가자 인적 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 대상 여부) 및 허가 조건
- 허가 기간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 유형, 주변 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 이내에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신청기간이 다음 1호, 2호 및 3호의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
- 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 30년
- 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중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 15년
 - ☞ 점용·사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하므로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 하여야 함.
 - ☞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히 점용·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취지에 어긋남
-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 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 4에 의함)
- 점용·사용의 목적은 당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용·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란에 또는 “붙임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허가조건을 기재한 후 허가증과 함께 점용·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허가조건

- 점용·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유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 됨
-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 부관은 아니 됨

라.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법 제17조, 영 제20조, 규칙 제15조·제16조)

▶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 대상행위

-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은 1년, 신고는 6개월의 범위에서 1번만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승인대상

-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다만,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로서 점용·사용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

계획신고의 대상임

- ☞ 공유수면관리청은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법 제8조제1항제2호(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제3호(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행위
 -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8조제1항제4호(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인공구조물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사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
-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 새로운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

- 실시계획승인대상 이외의 모든 점용·사용행위는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임

■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 실시계획승인(신고) 신청 또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

- ☞ 공사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따름
- 실시설계도서(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의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점용·사용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신고확인증) [별지 제13호 서식]을 교부함

▶ 준공의 확인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 및 규칙 제17조)

마. 고시 및 기록유지(법 제8조제6항, 영 제9조, 규칙 제10조)

▶ 점용·사용허가를 한 관리청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신고), 준공확인 사항은 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수면 관리대장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입력) 및 유지하여야 함

바.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사항의 변경

(법 제10조, 영 제8조·제20조, 규칙 제7조, 규정 제19조)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협의·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협의·승인)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대상
 -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점용·사용 기간의 단축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규정 제18조)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산 및 환불 조치

○ 첨부서류

-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 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한함)
- 관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관리청은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당초 허가 시와 동일하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

▶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공구조물의 규모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사 기간 6개월 이상의 연장

법령 해석례 6

Q (질문)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법제처 09-0136, 2009. 5. 22.]

A (답변)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자 및 계속 점용·사용자에 대한 조치

(영 제10조, 규칙 제8조, 규정 제19조)

- ▶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연장에 관한 안내서(규정 제19조 별지 제9호 서식)를 점용·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 ▶ 계속하여 점용·사용(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식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 법 제8조제4항,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시에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 점용·사용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영 제22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 권리·의무의 승계(법 제16조, 영 제19조)

- ▶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함. 이 경우 법인의 발기인

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관리청에 신고(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봄

0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가. 개 요

- ▶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에 대하여 그 유형과 면적, 형태(직접 또는 간접)에 따라 점용·사용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함
- ▶ 점용료·사용료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분할 납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인접토지 가격(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참조)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함

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법 제13조, 영 제14조)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2분의 1)를 감면함
 -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 ☞ 상기자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점용·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위해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항로표지법」에 따라 사설 항로표지의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방제장비 또는 자재(오일웬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로 규정된 것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 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참고 판례

점용료·사용료 감면 관련

- ① 舊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법령 해석례 7

Q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는지?[법제처 15-0241, 2015. 8. 10.]

A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13조, 영 제11조·제13조·제15조)

- ▶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으로 함
- ▶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20일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
- ▶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시에 부과하고,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

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회 납부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 점용료·사용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면서 점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나 입법 취지상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3개월 미만의 점용·사용 기간인 경우에는 일시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9개월인 경우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 점용료·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함

- ▶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 ▶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점용료·사용료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독촉,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의사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청산 등) 또는 「지방세징수법」제3장에 따른 체납처분을 의미함

- ▶ 그 외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

-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함

법령 해석례 8

Q (질문)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5-0242, 2015. 6. 17.]

A (답변)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례 9

Q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법제처 17-0590, 2017. 12. 7.]

A (답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라.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영 제13조)

▶ 점용·사용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함
- “토지의 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이 결정함
-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함
 -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 이 경우 점용·사용할 공유수면의 연장선 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토지로서 공시지가 또는 개별 토지가격이 형성된 가격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번지 또는 지번을 말함)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적용함. 이 경우 인접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

▶ 점용·사용료 산정기준(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溝渠)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 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2. 조선용 선가대(船裝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p>가. 전기사업용수 $\text{m}^3/\text{초당}$ 연액 20만 원</p> <p>나. 가목 이외 용수</p> <p>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 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 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 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 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 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 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 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 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3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text{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 유속}(\text{m}/\text{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 (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p>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동일)·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의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의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p>

구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p>채취단지 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p>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p> <p>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p>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에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p>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p>
<p>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p>
<p>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p>
<p>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 당 100원</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p>	<p>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p> <p>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p>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기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흙·돌·모래·자갈·준설토 등의 채취와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의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흙 등의 채취가격과 인수관·배수관의 지름에 따라 부과·징수함**

- 흙·돌·모래·자갈·준설토 등을 채취하는 경우 : 채취량을 기준으로 징수
- 물의 인수·배수의 경우 : 용수사용량 및 인수관·배수관의 지름을 기준으로 징수하되 인수·배수용 관로 등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별도로 징수

▶ **점용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산정함**

-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등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되,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한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액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시행령 제17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0/100+(증가율-10/100)×3/2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15/1,000+(증가율-20/100)×1/2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3/100+(증가율-50/100)×3/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45/1,000+(증가율-100/100)×3/2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6/100+(증가율-200/100)×1/2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75/1,000+(증가율-500/100)×5/2,000}]

▶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하여야 함(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다시 결정된 경우도 포함)
 -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법령 해석례 10

Q (질문)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법제처 21-0604, 2022. 4. 6.]

가. 중앙관서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31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로서 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하여 전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나. 공유수면관리청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같은 별표에 따른 조정산식의 “전년도 점용료·사용료”는 전년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사용료로서 조정하기 전의 점용료·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정하여 전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점용료·사용료를 의미하는지?

A (답변)

가.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점용료·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점용료·사용료를 의미합니다.

법령 해석례 11

Q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인근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점용·사용허가 기간의 구분에 따른 산정요율을 곱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정요율의 차이에 따라 점용료·사용료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정대상이 되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21-0293, 2021. 6. 29.]

A (답변)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됩니다.

0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가. 원상회복(법 제21조, 영 제22조·제23조)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을 전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점용·사용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원상회복해야 함. 다만,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나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경우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 점용·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써 관리청의 승인을 얻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그 밖의 물건(원상회복의 대상물)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점용·사용자에게 미리 위치·종류·수량·귀속시기 등을 통지하되, 점용·사용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원상회복 비용 예치(제21조)

-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신고를 받을 때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함<개정 2025. 9. 16.>
- 이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음<신설 2025. 9. 16.>

▶ 이행강제금(제54조의2)

-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법령 해석례 12

Q (질문)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99, 2018. 1. 22.]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A (답변)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공익을 위한 처분 및 허가 취소(법 제19조·제20조)

▶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유		조치 내용
허가 취소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관계문서 등의 조사, 토지 등에의 출입,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 공유수면관리청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유수면관리청은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조치 내용
	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점용·사용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표지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익을 위한 처분 (제20조)	•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이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취소한 이후 인공구조물 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는 당연히 허가받지 아니한 행위가 되고 그에 따른 처분이 따르게 됨

다. 금지행위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조치(법 제5조·제62조 내지 제65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말함. 다만,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손해배상 또는 장애물 등의 제거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려가게 하는 행위
-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법령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의 직권으로 또는 관리청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당국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물론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받게 됨. 다만, 법인 또는 그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벌칙	법령위반자 (처벌대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조에 따른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 점용·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관리청의 방치선박 등의 제거,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공익을 위한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사용하게 한 자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66조, 영 제75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3호 주소변경은 제외)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100만 원
2.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2호	100만 원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3호	100만 원
4.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	160만 원
5.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5호	100만 원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6조제2항제1호	170만 원
2.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6조제2항제2호	170만 원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이 청문 대상 외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마. 조사 및 결과 처리(법 제55조, 규칙 제41조)

- ▶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내보이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 경우 허가 여부를 불문함), 기타 공유수면관리상 취약지구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공사의 준공사항
-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태 및 관리상태
-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현황 및 처리실적
- 그 밖에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장애물 등의 제거 명령,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에 출입할 수 있으나, 그 점유자에게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장소, 조사 또는 측량 목적을 7일 전까지 통지하되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음

- ▶ 관리청은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토지 등을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06 기타 사항

가. 손실보상 등 권리의 구제(법 제57조, 영 제기조)

▶ 관리청이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조사·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

▶ 손실보상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재결에 따름

-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손실발생의 내용
-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 협의의 경위

나. 공유수면 관리실태의 보고(법 제55조, 규칙 제43조, 규정 제48조)

▶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실태 등을 조사한 후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 반기별
- 방치선박 등의 현황 및 제거 실적 : 분기별

-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급 지자체의 장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 ▶ 관리청이 보고하는 공유수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해역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리하는 해역을 포함함

Ⅲ

공유수면 매립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3. 공유수면 매립면허
4. 공유수면 매립공사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6. 기타 사항

01 공유수면 매립 개요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법 제28조)

구 분	관 리 청 (법 제28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영 74조)
(1) 10만 제곱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및 연안항		
○ 국가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연안항, 지방관리 무역항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그 외의 구역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단, 위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허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 중 매립면허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함

나. 주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제도변화

▶ 농업용지 매립면허관청

- '62. 1. 20. 국토건설청
- '64. 5. 2. 건설부(농업·수산업 목적 매립면허는 농림부)

- '66. 8. 3. 건설부
 - 단, 농림부장관이 면허·시공 중인 사업은 계속 농림부장관 소관
- '78. 9. 23. 건설부(농업목적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에게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165호) 신설
- '99. 8. 9. 해양수산부
 - 농지조성 및 축산업 목적의 매립면허를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두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348호)에서 삭제
- '05. 10. 1. 농업 목적의 매립면허 위탁규정 삭제(법률 제7482호, 대통령령 제19080호)
 - 단, 기 면허된 농업목적의 매립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지정항만구역안 외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08. 2. 25. 국토해양부
- '13. 3. 23. 해양수산부

▶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

- '86. 12. 31. 이후 : 5년
 - '86. 12. 31. 법률 제3901호, 매립목적변경 제한 기간 신설
- '99. 8. 9. 이후 : 20년 (기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99. 2. 8. 법률 제5911호, 투기목적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방지
- '10. 10. 16. 이후 : 10년 ('99. 8. 9. 이전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10. 4. 15. 법률 제10272호, 경제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 '62. 1. 20. 이후 ① 매립면허 받은 자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 국가시설로 필요한 토지는 국유 ③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자체에 귀속
- '65. 11. 25. 이후 ① 매립면허 받은 자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방사제·돌제·배수시설로 필요한 토지는 국유 ③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자체에 귀속
- '86. 12. 31. 이후 ① 매립면허 받은 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 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③ 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④ 제2, 3항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취득
- 개발이익 국가환수, 기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
- '97. 4. 10. 이후 ① 빈지,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② 빈지, 공용 또는 공공용 외에 매립지 중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③ 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④ 제2, 3항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취득
- '99. 8. 9. 이후 ①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②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은 국가에 귀속 ③ 제1, 2항 해당 매립지 외에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 ④ 제1, 2, 3항 외의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 매립사업의 주체

-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투기 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업진흥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필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 <'86. 12. 31. 신설>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기타 필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 <’97. 9. 28. 개정>

-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매립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이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 <’99. 8. 9. 개정>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이 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 <’05. 10. 01. 개정, 발전부분을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전력공사 배제>
-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지정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 국가·지자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 <’08. 06. 28. 개정>
- 지정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 국가·지자체가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 <’10. 10. 16. 개정>

공유수면 매립법령 제·개정 이유

연도	제·개정 이유
2026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한 자가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규정 신설
2017	매립예정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실시계획 수립,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매립면허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2010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및 준공 전 사용제한 규정 완화, 원상회복 명령권 신설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보완
200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개정으로 매립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 강화
2005	담당 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 장에게 위임,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1999 (전부)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

연도	제·개정 이유
1997	공유수면 개념에 빈지를 포함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국유인 잔여 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때,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함
1986	공유수면의 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국민 경제성장에 따른 토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
1972	건설부장관은 방호·방수시설을 설치하고 농림부장관은 개답·관개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행하는 농경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1966	농림부·건설부 장관이 분리담당하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건설부장관으로 통합
196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건설청이 폐지되고, 건설부 신설로 관계 조문 정비
1962 (제정)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조선공유수면매립령」 폐지)

다. 매립업무 처리절차



0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가.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법 제22조·제27조, 영 제17조·제25조·제26조, 규정 제22조)

▶ 수립주기 : 10년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수립요건 : 매립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수립절차 : (반영요청) → 매립 타당성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수렴(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견 첨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관계부처 협의사항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해양공간관리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에 관한 사항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 경관·생태계·습지·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항만·어항구역·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근거 : 「연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당연직 :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위촉직 :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 고시 및 통보(법 제26조, 영 제31조)
 -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 고시내용 :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예정지의 위치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검토사항(영 제25조)

-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 파도·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법령 해석례 13

Q (질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22-0378, 2022. 11.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본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1항), 지정권자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제2항 전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후단),

가. 지정권자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나. (질의 가에서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답변)

가. 이 사안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매립기본계획의 반영(법 제23조·제24조, 영 제26조부터 제31조)

▶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법 제23조, 영 제26조, 규칙 제21조)

- 요청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
 - 요청대상 :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 필요 공유수면
 - 제출서류 : 반영요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 사업계획서
 -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후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매립기본계획 우선순위(영 제11조)

-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가능
 -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것
 - ②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 ③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 ④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내용(법 제24조)

-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 매립목적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 매립으로 인한 다음의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
 -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

- 매립과 관련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영 요청 전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와 함께 반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함(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반영 요청 지구에 불법 이용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른 조치(원상회복 등)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함
- 바닷가만을 대상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신청을 할 수 없음. 반드시 바다를 포함하거나 바다만을 대상으로 매립신청을 해야 함

▶ 별도 제출 서류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결과 및 의견제출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
 - 협의 대상은 법률 제9조, 시행령 별표 2 참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근거하여 작성
 - 협의 대상은 법률 제5조, 시행령 별표 1 참고

〈환경 및 생태계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 작성례〉

항 목	내 용
1) 매립요청지의 현황	<p>가) 주변여건 : 매립요청지의 전경사진(바다인 경우에는 만조 및 간조시의 사진을 말함)에 매립요청지역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행정구역이나 주요 지형·지물 등을 예시하여 설명</p> <p>나) 주변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요청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매립면적(제곱미터)·매립목적·공사기간 및 매립지이용실태 등 공유수면의 현황을 조사·기술 ○ 기타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조사·기술 <p>다)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 : 매립요청지의 인근에 위치한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과 매립요청지와의 거리 등 개략적인 현황을 조사·기술</p>
2) 환경·생태계의 현황	<p>가) 매립요청지의 갯벌 또는 내륙 습지의 규모(제곱미터)</p> <p>나) 생태계(인근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육상 및 해양에서 관찰되는 동·식물상의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군락의 종류 - 계절별로 출현하는 동·식물의 종류 등 군락별 구체적인 특성 ○ 매립요청지 안의 해양생물의 종류·서식지의 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헌 또는 현황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시 <p>다) 물리학적 환경조사 : 매립요청지의 폐쇄성의 정도·해류 및 조류의 현황과 토사의 이동실태, 조수간만의 차이 및 해변 암초군의 분포실태 등</p> <p>라) 이화학적 환경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요청지역 인근의 주요 오염원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 ○ 육역·하천 및 수역 등에 대한 환경기준 및 수질 등 매립요청지의 환경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문헌 또는 현황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출
3)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대책	<p>가) 매립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 저감대책</p> <p>나) 매립 후 매립지 안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p> <p>다) 기타 환경상의 영향에 관한 저감대책</p>

※ 비고 : 당해 매립사업의 위치·매립목적·규모 등을 감안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하되, 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함

다. 매립예정지의 권리설정 제한(법 제26조제3항·제4항, 영 제33조)

▶ 기 설정된 권리 : 제한하지 아니함

▶ 새로운 권리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 불가

- 매립기본계획수립 당시 이미 공유수면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 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 매립기본계획수립 이후에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또는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양식업허가를 하는 경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라. 매립기본계획의 변경·해제(법 제25조, 제27조)

▶ 변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변경시기 :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변경(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 반영

▶ 변경절차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음

▶ 검토사항 :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과 같음

▶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 검토주기 : 5년
- 조치사항 :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 매립목적의 변경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법 제25조)

- 매립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봄
- 매립기본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고시
 - 매립예정지의 위치
 - 매립목적
 - 매립예정지의 면적
 - 해제 사유

03

공유수면 매립면허

가. 매립면허(법 제28조)

▶ 면허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면허절차 : 환경영향평가·피해영향조사(신청자) → 면허신청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면허처분 → 고시

▶ 매립면허신청(법 제28조제1항, 영 제34조)

-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매립면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다음의 관계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신청서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매립목적용 명시

- 신청서류(규칙 제24조)

- 사업계획서
-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구역용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해당)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결과)을 제출토록 변경되었음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

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 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함).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관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지조사서 작성(규정 제26조)

- 매립면허관청은 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상황
 - 매립이 항로, 공유수면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
 - 기타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
 -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 및 권리의 종류
 -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지목·면적·종류 및 그 관리청
 - 기타 매립면허상의 참고사항

■ 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규정 제32조)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 신청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위치·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면허신청서가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매립면허의 범위(법 제28조)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면적·용도 등)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함(법 제28조제5항)

▶ 국가 등의 매립우선지역(법 제28조제7항, 영 제36조)

-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 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지자체만 매립할 수 있음
- 단, 다음의 경우는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인도 매립할 수 있음(영 제35조)
 -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 23만㎡ 이하
 - 물류단지·가공시설 용지 : 16만 5천㎡ 이하
 - 주택시설용지 또는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2 제17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를 말함) : 10만㎡ 이하
 -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 국가·지자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등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 협의(법 제28조제4항, 규정 제27조)

-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농·축산업용지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상·공업,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항 : 산업통상부장관
 - 환경영향 등과 관련된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항만, 어항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약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 문화재보호·관리와 관련된 사항 : 국가유산청장
-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 면허의 기준(법 제30조, 영 제38조)

- 매립면허신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음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매립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 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이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다음의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매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함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법 제31조)
 -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법 제28조제4항·제5항, 영 제34조제2항, 규칙 제24조)

- 매립면허신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규정 제28조)
 - 매립기본계획상의 목적, 면적, 토지이용계획,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 등 매립기본계획에 부합 여부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 규칙 제24조제2항 각호에 따른 서류가 적정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함(규정 제29조)
 -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의 상호 부합 여부
 -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여부(「상업」 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 법인 모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 포함)
 -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 여부
 - ※ 면허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계획된 실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바다·바닷가 등 당해 공유수면의 형상, 당해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 개발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매립기본계획 상의 면적보다 증가는 불가)에서 면허 신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할 수 있음(규정 제30조)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함(규정 제31조)
 -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계(업무처리규정 별표 5)

< 호 안 >

-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매립공사는 호안공(외곽공)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
- 침단에는 두께 0.2미터, 폭 0.6미터 이상의 침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침단 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 반파구조로 함
- 선박의 계선을 필요로 하는 호안에는 15미터 내지 30미터의 간격으로 계선주를 설치하여야 함

< 방 조 제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상부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제벽을 설치하여야 함
- 구조는 바닷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반의 침하나 파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함

< 물 양 장 >

- 구조물 형식은 사면식, 계단식 및 직립식 중에서 이용도와 유지·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름
 - ① 사면식은 사면비탈이 1:4보다 급하여서는 아니 됨
 - ② 계단식의 1계단 치수의 높이는 1.2미터, 폭은 0.35미터 내외로 함
 - ③ 직립식의 경사는 1 : 0.3 범위 안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충재를 설치하여야 함
- 계선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로 함
- 후면에는 화물의 하치장 및 임항도로를 설치하되, 지정항만 안의 하치장폭은 30미터 이상, 항만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하치장 및 임항도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음

- 전면은 선박의 이·접안에 필요한 적정수심을 확보하여야 함

< 도 로 >

-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유효 폭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매립지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음
- 옆도랑을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매립(간척제외) >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에 감안하여 공유수면의 매립 후 주택·상가·공장 기타 건축물의 설치가 계획된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지 조성 후의 지반침하 등의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에 적합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선택·적용하여 매립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지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매립지반은 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성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층을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복토의 두께는 0.2미터 이상이어야 함
-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는 산토 및 준설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준설토 기타 매립지반이 연약한 토사의 매립으로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매립 표고를 결정하여야 함
- 성토표고는 호안표고 이상이어야 하며, 매립부지 내에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경사를 두어야 하되 다만, 성토표고는 매립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호안 및 물양장 등의 배면을 준설토 등 연약한 토사로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트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위차가 큰 지역에서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강토 등으로 매트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배수시설 >

- 매립지 안의 배수시설은 매립지 인접지역의 집수구역과 배수량 및 매립지 안의 배수 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와 단면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도로(해안도로, 강변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는 반드시 옆도랑을 설치하되 필요한

개소에 암거집수거 및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기 타 >

- 바다·바닷가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준면(해도의 “기본수준면”)을 사용하여야 함
- 설계조위는 파랑, 너울, 부진동, 쓰나미(Tsunami : 해일), 천문조(조석) 및 기존의 최고만조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하천과 바다가 합류하는 하구지역은 충분한 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주변 조위의 상승고 및 배후지역의 배수처리의 지장 여부 등을 포함한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시험을 거쳐야 함
- 매립에 소요되는 토량에 상당하는 이용 가능한 취토장 등이 확보되어야 함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 검토를 한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함(기술검토서 첨부)

기 술 검 토 서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소				
④ 매립위치					
⑤ 매립면적		m ²	⑥ 매립목적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1. 항만계획 및 기타 국가계획 저촉여부					
2. 도면검토 가. 매립면허의 신청인이 제출한 구적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도면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 나. 위치도는 축척 25,000분의 1 지형도에 신청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3. 신청위치 및 인접지역의 개략적인 해저지질현황(검토자가 조사 기술하여야 함)					
4. 신청면적 : 가. 면적산출의 정확성 여부 나.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실수요면적 다. 바닷가 또는 기존 매립지 포함여부					
5. 호안, 물양장, 안벽, 도로 등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6. 해안도로와 기존 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연계여부와 그 대책					
7. 공사기간은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검토결과 공사기간		월	
8. 공사비는 영 제51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는지 여부		검토결과 공사비		천원	
9. 도근점 설치소요 개수		개			
10. 기타 매립면허시의 참고사항					
검 토 일	년 월 일	검 토 자 직·성명		확 인 자 직·성명	

▶ 매립면허의 부관(법 제29조, 영 제37조, 규정 제33조)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다음 사항을 부관으로 붙일 수 있음
 -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 면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도근점 및 매립표고를 수시로 검측할 수 있는 기본수준면의 기준수준점 설치에 관한 사항
 -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매립면허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금액(조성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 법 제4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에 관한 사항
 - 제35조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제36조에 따른 설계자문에 관한 사항
 - 제38조에 따른 매립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제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매립면허의 고시(법 제33조, 영 제42조)

-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매립목적
 -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 매립공사의 기간
- ☞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는 그 공유수면에 대하여 피면허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 등 다른 권리를 새로이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면허수수료(법 제34조, 영 제43조·제44조, 규칙 제25조)

-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격을 말함
 -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함
 - 매립면허수수료는 매립면허일을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한 인접토지의 가격에 다음 표의 등급 구분에 따른 기본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등급	등급 내용	요율
1등급	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2등급	1. 특별시·광역시·도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등급	등급 내용	요율
3등급	1.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4등급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3

- 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매립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법 제34조 단서)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시행하는 매립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시행하는 매립
 -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매립면허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귀속됨(영 제43조제3항)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
 -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군·구 또는 자치구의 수입
 -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

나. 매립협의 또는 승인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법 제35조, 영 제45조)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규칙 제3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음
- 매립면허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매립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와 바닷가에 상당한 면적을 제외한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국가 등의 매립의 경우 총사업비 정산을 통해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개인의 매립면허와는 달리 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법 제36조, 영 제46조, 규정 제34조)

- 국가나 지자체가 다음과 같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음
 -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 포함) 건설
 -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설
 -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 재해 복구 및 예방 사업

- 연안정비사업

-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음
-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은 사업시행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 합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소규모 매립제도는 매립기본계획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급하고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소규모 매립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부사업 매립지의 이관(법 제37조, 영 제47조)

- 매립면허관청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매립지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은 조성된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서·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함
 - 매립지의 소재지
 - 매립목적
 -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매립면적(㎡)
 - 총공사비
 -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다. 손실보상(법 제32조·제57조, 영 제40조·제71조)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받게 될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
 -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
 -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이가 성립되었거나 그 시설설치의 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일 때에는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아직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함
-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을 방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와 그가 설치한 시설 등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토지 등예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예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에 따른 재결신청

-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손실발생의 내용
 -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 협의의 경위
 -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결과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라. 매립면허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법 제43조, 영 제49조의2, 규칙 제30조)

▶ 권리·의무의 이전·승계

-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함

▶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 신고

-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시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신고서를 제출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됨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함
 - 권리의 양수 :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양도·양수계약서 등
 -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을 증빙하는 서류
-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는 공유수면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봄

04

공유수면 매립공사

가. 실시계획승인(법 제38조, 영 제48조, 규칙 제29조)

▶ 승인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 매립면허관청

▶ 승인절차 : 권리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피면허자) → 승인신청(면허일부터 1년 이내) → 검토(설계도서 등) → 관계기관 협의(필요시) → 승인처분 → 고시

▶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규칙 제29조)

- 매립면허(승인)를 받은 자는 면허(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면허(승인)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별지 제12호 서식]을 하여야 함
 - ☞ 매립면허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공사설명서(매립공사시방서·공사명세서·공사비 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 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면허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 참고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은 당초 면허일부터 6월 이내로 하다가 '99. 1. 1부터 1년 6월 이내로 연장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99. 8. 9부터 6월 이내로 변경하였고, 그 후 '07.12.27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하여 시행 중임
 - ☞ 첨부서류 중 매립공사설명서·실시설계도서·예정공정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 9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설계 등 용역업자(농업·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함

■ 실시설계도서의 검토(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

- 피면허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실시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와 참여 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호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금액(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인 매립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문을 받고 그 자문결과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법 제28조제 2항에 따른 매립구역 안 공유수면 :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 바다·바닷가에서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및 「하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 당해 매립면허관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 위 사항 외의 공유수면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 관계기관 협의

- 매립면허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타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승인 시 검토사항(규정 제37조)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면적의 적정성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만 해당)
 -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지 여부
- ☞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고 매립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받은 매립예정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실시계획 승인 가능

▶ 매립공사 건설사업관리(규정 제38조)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매립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 위 사항 외의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관청이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되, 공사 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와 매립공사 착수 전에 선정된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외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일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까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사업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구역,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 :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외의 구역 : 해당 매립면허관청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준용

■ 실시계획 변경승인

(법 제38조, 영 제48조, 규칙 제29조제3항·제4항 전단, 규정 제39조)

- 변경승인 신청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 한함)
 - ※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을 시행하는 자가 작성·검토한 것을 제출
 - 변경된 예정공정표
- 변경승인의 범위 : 매립면허관청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매립구역의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함. 변경승인 시에도 최초 승인 시와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변경승인 시 검토사항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 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에서 정한 매립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 연장의 적정성
- 영 제51조제4항제5호 라목의 후단 및 동조동항 제6호 후단(공사비 상승액 및 건설이자 산입 제외)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여부
- 변경사항이 매립기본계획,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부합하는지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기준)과 비교하여 변경된 순공사비가 적정한지
- ☞ 매립면허관청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의 검토 결과, 매립공사의 준공기간 연장 등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영 제51조제4항제5호 라목의 후단 및 동조동항제6호 후단의 규정이 적용됨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
 -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매립목적
 -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
 -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인가·허가 등의 의제(법 제39조)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위의 어느 하나 또는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
 -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매립공사(법 제40조)

▶ 토지 등에서의 출입(법 제41조)

-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의 일시 사용
 - ☞ 토지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법 제42조)

- 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시설(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 포함)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양여 :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로 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매각 : 양여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음

다. 준공 전 매립지 사용 및 준공검사

(법 제44조·제45조, 영 제50조, 규칙 제32조, 규정 제42조)

▶ **검사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
매립면허관청

▶ **준공 전 매립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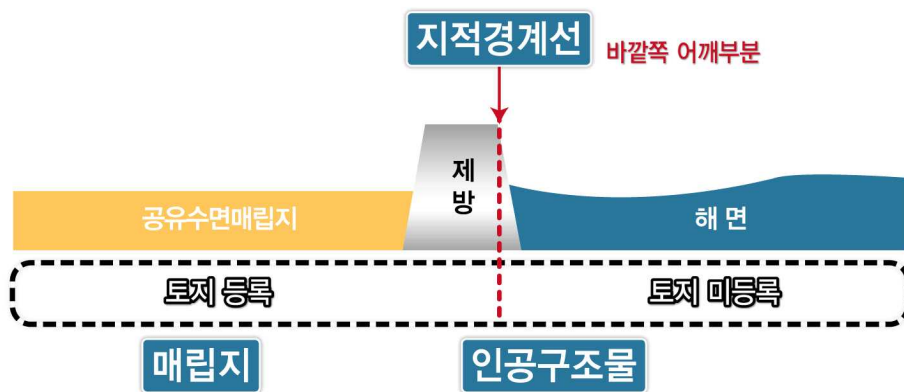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에 인공구조물 설치가 가능함

▶ **준공검사 신청(규칙 제32조)**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매립지 위치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지자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 증빙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
-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준공검사 시행(법 제45조, 규정 제42조)

- 매립면허관청이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준공검사 신청 시 준공조서와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가 공동으로 검토·확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공사감독을 시행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해당 공사감독자와 매립면허 관청이 공동으로 검토한 것인지 확인함
- 매립지(토지)와 공유수면의 지상경계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을 말하며,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사로(斜路) 등은 제외) 또는 안벽(부두벽)의 윗부분 끝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은 선 안의 토지를 매립지로 하고, 선 밖에 있는 호안·안벽 등은 인공구조물로 함



-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법령 해석례 14

Q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척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4-0777, 2015.2.10.]

A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0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기준(법 제46조)

- ▶ 국가·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 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 국가 또는 지자체**
 - *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배수시설·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 용에 필요한 매립지 등을 말함
 - ** 국가의 시설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귀속, 지자체의 시설로 필요한 매립지는 지자체 귀속
 -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 : 국가
 - 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함
 - 국가가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 : 매립면허취득자
 - 국가·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잔여매립지) : 국가

대상	귀속 주체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자체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	국가
국가·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국가·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잔여매립지)	국가

법령 해석례 15

Q (질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3-0290, 2013.9.24.]

A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총사업비 산정(영 제51조, 규정 제43조·제44조)

▶ **총사업비 산정 방법**

-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및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

▶ **사업 비목별 산정 방법**

- 조사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
- 설계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 이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
- 순공사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 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라 계산
- 보상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든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 부대비 : 다음 비용의 합계액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

공감리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보험료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 이 경우 공사비 상승액은 영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영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 **공정별 건설이자** : 조사비부터 부대비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적용)
 - 이 경우 건설이자는 영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 조사비부터 부대비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총사업비 산정 시 고려사항(규정 제43조)**

-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精算)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 변경 시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함
- 순공사비의 비목 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율, 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를 기초로 함
- 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함)는 총사업비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매

립세액)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 부관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 다만,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험 및 다른 방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보험수수료 등은 산입하지 아니함
-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적용

다. 매립지의 가격 산정(영 제51조, 규칙 제33조)

▶ 매립지의 가격 산정 방법

- 해당 매립지의 가격 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다음에 의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매립면허관청은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재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매립지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할 매립지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천하여 지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협회에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이 감정평가업자 지정을 위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일시 및 추천 장소
 - 지정 대상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
-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하여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매립면허관청은 위 사항의 공고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수 있음
- 매립면허관청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법령 해석례 16

Q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A (답변)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합니다.

라. 잔여매립지의 매수 청구(법 제47조, 영 제54조)

▶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기한

-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함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함
 -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국가 귀속 (잔여)매립지의 임대

- 국가는 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 ☞ 다만, 잔여매립지가 매수청구기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가 귀속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함
 - 임대방법 :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 임대기간 : 법 제4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 임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법 제48조, 영 제55조)

■ 매립목적 변경 제한 등기

-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유권 행사(매립목적) 제한사항을 적어야 함
 - ☞ 이 매립지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

(년 월 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적음)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

-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매립목적 변경 제한의 예외(법 제49조, 영 제55조·제57조, 규칙 제34조)

- 다음과 같은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용지만 해당)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간에 상호 변경하는 경우
 - 영 제34조제2항의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 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 목적을 상호변경하는 경우
 - 매립면허 당시 법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시행규칙 제34조 별지 제3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 서류
 - 매립목적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매립면허관청은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 중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재평가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제세공과금 : 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공과금 또는 부담금
 - 감정평가비 : 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 자본비 :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시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함
 - 그 밖의 비용 :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 영 제51조제2항·제3항을 준용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매립목적 변경 승인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영 제59조)
 -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변경 전의 매립목적
 - 변경 후의 매립목적
 -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필지 및 면적
 - 매립목적의 변경 사유
-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매립목적변경 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법 제50조, 규칙 제35조)

- 국가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매립면허관청은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6항을 준용함

▶ 매립지 사용의 확인(법 제51조, 영 제60조, 규칙 제36조)

-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 출입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매립면허관청은 위 확인결과를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반기별로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

참고 판례

매립목적 변경 관련

- ① 舊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매립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의2가 적용되고, 그 조항은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가 준공인가 전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인가 전에 매립 목적의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 승인은 원래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한 행정청이 매립지의 상황, 매립사업의 내용과 진행 정도, 변경되는 매립목적의 내용, 매립목적 변경의 필요성 및 효과, 매립목적 변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005 판결)

06 기타 사항

가. 공익 확보 등을 위한 조치(법 제52조, 영 제52조·제61조)

▶ 매립면허의 취소 등

-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이 경우 매립면허를 취소해야 함)
 -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예정공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 매립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제2항(목적변경)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 보상(법 제57조, 영 제71조)

- 매립면허관청은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거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여 매립면허 등이 취소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 매립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함

나. 매립면허의 효력상실(법 제53조, 영 제63조, 규칙 제38조)

▶ 매립면허의 효력상실 사유

-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 상실하지 아니함

▶ 매립면허의 회복

-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음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 미준공으로 인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음
 -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예정 공정표
 -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음

다. 원상회복(법 제54조, 영 제64조부터 제68조, 규칙 제39조·제40조)

▶ 원상회복 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 매립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 행정대집행

-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원상회복 의무면제

- 매립면허관청은 다음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별지 제35호 서식]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로부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알려야 함

▶ 시설물 등의 국가 귀속

-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매립공사 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음
- 해당 매립공사 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수량·귀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함
- 국가는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 ※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하지 않거나 의무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가귀속(법 제54조제6항), 매각, 임대(법 제54조제7항) 규정 준용

▶ 원상회복 의무이행 보증

-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지자체·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 의무이행보증금은 현금의 납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이행보증금의 반환

-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에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 이행강제금(제54조의2)

- 매립면허관청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함
-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함
-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법령 해석례 17

Q (질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는 누구인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법제처 17-0632, 2018. 1. 22.]

A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되어 해당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 매립공사가 진행되던 중, 해당 농공단지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승인으로 의제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장래를 향해 실효된 경우,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 매립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입니다.

참고 결정례

무면허 매립행위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 ① 국유화의 가능성은 매립자가 면허를 얻지 않은 채 매립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무면허 매립자라 할지라도 원상회복의무를 다함으로써 위 국유화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면허없는 매립자의 원상회복의무는 국토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 및 어업권의 보호 등 공공적인 필요와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의 원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매립자가 투입한 토사와 시설 등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은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공적 법익과 배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었을 경우 매립공사 구역 내의 시설 기타 물건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98헌바34, 2000.0.0, 전원재판부 판결)
-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율의 형식과 목적의 면에서 볼 때,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무면허 매립자의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의도적·계획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재산권의 수용 규정이라기보다는 무면허 매립공사가 시행된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관리권의 행사, 그 공유수면에 설치, 투입된 시설 기타의 물건, 나아가 당해 매립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에 대한 사후처리 내지 권리귀속 관계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형성하고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98헌바34, 2000.0.0, 전원재판부 판결)

라. 보고·검사 및 청문(법 제56조· 제58조, 영 제70조)

▶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출입·검사 및 질문

- 매립면허관청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사업장·매립 예정지·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청문

-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매립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 효력상실 및 원상회복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마.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법 제62조·제65조)

▶ 벌칙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2조)
 -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10년이 내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3조)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태료(법 제66조, 영 제7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립면허관청이 부과·징수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6조제1항제1호	220만 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법 제66조제1항제2호	500만 원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법 제66조제1항제3호	220만 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립면허관청이 부과·징수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6조제2항제3호	210만 원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이 청문 대상 외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IV

기타 참고사항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3. 기능을 상실한 공유수면의 용도폐지
4. 그 외 주요 참고 사항

0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1962. 1. 20. 〈신규제정〉	<p>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예외로 한다.</p> <p>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영 제19조 (매립지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써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시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의 날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1965. 11. 25. 〈일부개정〉	<p>영 제19조 (매립지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방사제·돌제·배수시설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65·10·25〉</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써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시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의 날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 경과규정 없음
1986. 12. 31. 〈일부개정〉	<p>제4조 (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p> <p>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p> <p>③ 건설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6·12·31〉</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④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에 서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신설 1986.12.31></p> <p>법 제12조 (준공인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 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12.31]</p> <p>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법 제29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p> <p>④ 제4조제3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p> <p>영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 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 준으로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p>	<p>* '88.6.27. 농업목적의 매립면허 는 농림부 장관에게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대통령령 제 12472호)</p> <p>* '08.6.28. 한국토지공사외 정 부투자기관 삭제</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다른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당초의 평가와 재평가에 의한 모든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 중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를 말한다.</p> <p>③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1987.10.13.)</p>	<p>(취지)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에 관계 없이 매립지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사업비(적정이윤 포함) 상당분만을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함.</p> <p><경과규정> ③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1997. 4. 10. <일부개정></p>	<p>법 제29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4·10></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4조제3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p> <p>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된 빈지지역 (이하 이 조에서 빈지매립지라 한다)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준공인가신청 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1997·4·10></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빈지매립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와 빈지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이 경우 빈지매립지에 대하여는 빈지매립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97·4·10></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④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매립지의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4·10></p> <p>⑤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그 매립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p>	<p>(취지)매립지중 빈지지역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p> <p>* 경과규정 없음</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4·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중 관광호텔업을 위한 시설과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 휴양시설 및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p>⑥ 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의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4·10></p> <p>⑦ 제1항의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999. 8. 9. <전부개정>	<p>제38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법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p> <p>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p> <p>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p>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는 제2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p>	<p>(취지) 갯벌 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시 공유수면 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질을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경과규정 없음</p>
<p>2010. 4. 16.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법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법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준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다.</p> <p>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p> <p>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2014. 6. 3.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신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준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p> <p>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p>	
2017. 3. 21.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p>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법률</p>	<p>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 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p>	
<p>2019. 8. 20.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p> <p>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19.8.20></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7.3.21, 2019.8.20></p> <p>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19.8.20></p>	

0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1986. 12. 31. 〈신설〉	법 제4조 (면허) ④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신설 1986.12.31.〉	(취지)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 등의 공유수면에서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
1987. 10. 13. 〈신설〉	영 제8조의2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등의 매립)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공유수면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진흥공사 2. 산업기지개발공사 3. 한국토지개발공사 4.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중 공유수면의 매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 ③ 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등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립지의 용도 및 용도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업용지의 경우 :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상업용지의 경우 :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의 경우 : 10만제곱미터 이하 2. 해안경관의 개선이나 해안이용의 증진을 위한 해안선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화학공업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87.10.13.]	(취지)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투기 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개인 등이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지역에 있어서 개인 등이 매립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를 소규모의 공업용지·상업용지·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영 제8조의2제3항)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1997. 9. 28. (일부개정)	<p>영 제8조의2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등의 매립)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공유수면을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8. 6. 17., 1996. 2. 15., 1997.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중 공유수면의 매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 <p>③ 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등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지의 용도 및 용도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업용지의 경우 :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상업용지의 경우 :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의 경우 : 10만제곱미터 이하 2. 해안경관의 개선이나 해안이용의 증진을 위한 해안선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화학공업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 <p>[본조신설 1987. 10. 13.]</p>	
1999. 8. 9. (일부개정)	<p>법 제9조 (면허) ④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p> <p>영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 법 제9조</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1999. 8. 9. 〈일부개정〉	<p>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 <p>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유통·가공시설용지: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10만제곱미터 이하 2. 해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05. 10. 1. 〈일부개정〉	<p>법 제9조 (면허)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p> <p>영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 법 제9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삭제 〈2005. 9. 30.〉 5. 한국석유공사 	<p>(취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독점적 지위 배제(현행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1) 공유수면 매립의 수요가 없는 일부 정부</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6. 한국관광공사 ②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30.>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10만제곱미터 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투자기관에 대하여 그동안 부여되었던 공유수면 매립의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6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 등 특정 지역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던 것을 발전부문을 사회사로 분리한 한국전력공사를 배제하여, 5개로 축소함. (3)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특정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을 실수요 위주로 허용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개발을 억제하고 그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p> <p>(경과규정) (도시계획구역 등에서의 매립이 허용되는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에 의한다.
<p>2008. 6. 28. 〈일부개정〉</p> <p>2008. 6. 25. 〈일부개정〉</p>	<p>법 제9조 (면허)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p> <p>영 제8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개정 2008.6.25〉</p> <p>① 삭제 〈2008. 6. 25.〉</p> <p>② 법 제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8. 6. 25.〉</p> <p>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p> <p>나. 유통·가공시설용지: 16만5천제곱미터 이하</p> <p>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 이하</p> <p>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 경과규정 없음</p>
<p>2010. 10. 16.</p>	<p>법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p>	<p>(경과규정)(매립면허취</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이동 <제정></p>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특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820호 ('08.6.28)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종전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하여는 종전법 제38조(준공검사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양도 양수 가능)를 적용한다. 다만, 매립목적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한다.</p>
<p>2014. 6. 3.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p>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017. 3. 21.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p>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3. 21.)	
<p>2019. 8. 20.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p> <p>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p> <p>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2019. 8. 20.></p> <p>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0.></p> <p>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0.></p>	

03 기능을 상실한 공유수면의 용도폐지

가. 용도폐지의 의의

▶ 용도폐지란 국가의 행정 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 및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이 기존의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는 것을 말함(「국유재산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일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위임

* 용도폐지된 재산은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직접 인계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 원칙적으로 공유수면은 행정재산으로 보전·관리되나 더는 공유수면으로 보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되면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함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함. 행정재산은 국가의 행정 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처분하지 못함.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분류하며 대부와 처분이 가능한 재산임(「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분류〉

구분		내용
행정 재 산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나 정부기업이 5년간 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박물관, 교도소 등)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나 정부기업이 5년간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부기업이 5년간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 우편사업, 조달사업 등)
	보존용 재산	문화재나 사적지 등 법령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 (2009.1.30.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됨)

- 용도폐지에 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당해 행정재산의 관리청에 있고, 2차적으로 총괄청이 관리청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대법원 1966.5.17. 66다488).

- 용도폐지 대상(사유)

-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이 더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하천 등의 공공용재산이 공공성 상실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공성 상실에 따른 행정절차(용도폐지 후 재산인계)를 거쳐 총괄청에 인계하는 시점까지는 기존 관리기관이 이를 계속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도 징수하여야 함(국재22400-3643, 1989.10.17.)

-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함(「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2조)

-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
- 공공용 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음.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규정 적용대상임

원래에 공유수면이었던 곳이 사실상 토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대법원 2012두2764, 2013. 6. 13. 선고)하고 있으므로 공용폐지가 있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

나. 용도폐지의 절차

▶ 행정재산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재산은 그 현황을 조사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즉시 총괄청에 인계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함

- 용도폐지는 직접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 하는 처분행위로 행정재산(공유수면)이 용도폐지 된 이후에도 국유재산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됨
- 용도폐지는 직권 또는 연고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능함
- 위임관리기관은 용도폐지 결정 후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행정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한 후 총괄청으로 인계하여야 함

※ 용도폐지 구비 서류(「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4조)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 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 재산인계기관(관리청)은 용도폐지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지목변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용도폐지 재산인계 및 분청(시·도 등)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보고를 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재산의 인계·인수를 병행함

- 재산인수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실태조사를 거쳐 재산인계기관에 재산 인수 통보 및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으로[국(재정경제부)] 변경의 등기를 촉탁하고, 총괄청에 용도폐지 재산 인수 보고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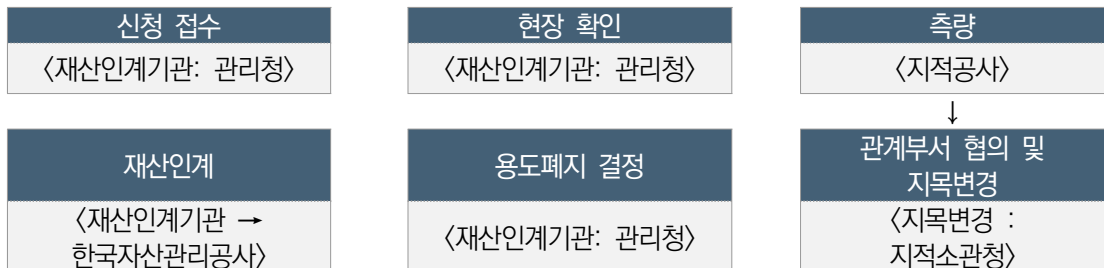
▶ 관리청은 용도폐지 처분을 하기 이전에 지적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른 경우 현황지목을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공부상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으로 되어있는 재산의 지목변경 시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부서에 공공시설로서의 존치 필요 여부 등 의견조회 후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함
-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철도용지 등으로 된 행정재산이 전, 답, 과수원, 광천지, 잡종지의 지목으로 변경되거나 재산의 형태가 사실상 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함

※ 사실상 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란 도로노선의 변경으로 폐도가 되거나, 하천의 유류변경으로 폐천이 되어 현실적으로 전, 답, 대, 염전, 광천지, 유지, 잡종지로 사용되는 경우, 유지가 매립 또는 공사가 되어 농경지 또는 다른 지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 ▶ **용도폐지 후 인계하는 재산의 기존 사용허기(공유수면 점·사용허기)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됨(「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 **관리기관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함(「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3조)**
 - 각 중앙관서 및 시·도지사는 소관 재산 중 도로·하천 등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공공용 지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관리청장(농지과, 건설과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및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에서는 「국유재산법」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에 의거하여 관리전환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 **관리기관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 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함(「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용도폐지 절차〉



04

그 외 주요 참고 사항

가. '포락지' 관련

-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함(공유수면법 제2조제2호)

※ 법에서 정한 포락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임(동법 시행령 제5조)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포락지를 다시 토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통한 복원이 불가피하므로 복원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사유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류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9호)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토지가 포락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적소관청 및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에서 담당하므로 이곳으로 문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
 - *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말함
 - ☞ 해당토지가 만조 시에만 물이 잠기는지 또는 항상 물에 잠기는지의 여부는 해당토지가 포락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아님. 토지가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함
-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나 포락지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12조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해야 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락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동법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동법 시행령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 ☞ 사유간석지·간석지와 비교
 -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하며, 사유간석지란 이중 국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한 것을 말함

구분	포락지	사유간석지	간석지
지적공부 등록	등록되어 있음	등록되어 있음	등록 대상 아님
소유권 유무	유	유	무
점용·사용 허가	허가대상	허가대상	허가대상
토지조성	토지로 다시 조성할 시 점용·사용 허가대상	토지로 다시 조성할 시 점용·사용 허가대상	공유수면 매립
지적등록 말소	말소 대상	등록 유지	해당 사항 없음

나.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제1호)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입어자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7.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8.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자를 판단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1.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제1항 각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제1호),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제2호)
-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공유수면 인접부지 토지소유자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인지 여부를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여건, 점용·사용 목적, 인접 공유수면 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다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피해가 예상되지 아니한다면 권리자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할 것임

다.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의미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수역에 인접한 구역뿐만 아니라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함
 - 인접의 범위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 구역에 직접 접한 토지뿐만 아니라 당해 점·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이웃하는 토지까지 포함된다
고 보지만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위치·목적·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내용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6호의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인접'이란 공유수면에 직접 접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함.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함(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 접한 토지의 가격은 '대지' 등 특정 지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 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간에 편차가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필지별 길이를 반영하고 가중평균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 물이 흐르지 않아 하천·호소·구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공유수면으로 보아 공유수면법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사용료를 산정하게 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음

라. '원상회복 의무면제' 관련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등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
 1.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2.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
 3.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와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원상회복 의무자가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해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음(동법 제21조제6항)

※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는

1.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자가 계속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계속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등이 포함됨

-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처분 대상임
- 따라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조치가 된 이후에는 다른 신청인의 신규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사용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초과 사용면적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후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음
-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하였다고 하여 현 사용자들이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 가능성, 불법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주변 상황 및 공유수면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마. 축제식 양식장 운영을 위한 점용·사용 허가사항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함(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5호)
 - 따라서 해수 인·배수를 위해 인·배수관 등을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행위(점용)를 포함하여 해수를 인수하거나 배수를 위해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사용)하는 행위도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아울러, 「수산업법」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동법 제18조제1항, 제49조)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5호(인수배수 행위)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을 위한 인수배수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5년 이내이나, 인수배수 행위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있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3월 21일 공유수면법 제11조가 개정되면서 인수배수 행위의 경우 점용·사용 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하였음
-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점용·사용 목적, 인접 공유수면사용의 제한 및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결정할 사안임

바.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의미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공유수면법 제8조제8항)
-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의 수저·수중수면 및 수면 위의 일정한 공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며, 사용허가는 바닷물,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 공유수면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나, 점유와 사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공유수면을 점유하지 않고 자원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어 대체로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사용허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받은 공유수면 내에서 제3자의 어로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므로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음

- 다만, 기존에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 동일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존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해당 공유수면의 공동 점용·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점용·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판례

- ①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 ②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 ③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 별도로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중 특정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 ④ “공유수면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다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공유수면의 일반 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 관련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여러 사람이 동일한 공유수면을 동일한 목적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다양한 점용·사용 행위가 동일한 공유수면에 중첩되더라도 수면/상공/수중/해저 등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등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병존이 가능하다면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함
- 아울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해당 공유수면 주변 여건, 점용·사용 목적과 기간, 인접한 공유수면 및 토지이용의 불편·제한 등 피해 발생 여부, 권리자의 동의 여부 및 공유수면법 이외의 다른 관련 법령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V

부 록

1. 공유수면관리법의 제·개정 연혁
2. 공유수면매립법의 제·개정 연혁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골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개정 연혁

01

공유수면관리법의 제·개정 연혁

공포번호	848	공포일자	1961.12.19.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
------	-----	------	-------------	-----	---------

[신규제정]

공유수면을 관리·보전·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위해의 예방·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① 국유의 수면 및 수류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과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河·海·湖·沼 등으로서 이는 중앙관리청인 국토건설청장과 지방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함.
- ② 공유수면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준설, 굴착, 토석채취, 식물재배, 점용, 위생상 유해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 ③ 공유수면지역내에서 선거, 선유, 하양장, 잔교, 호안, 방파제, 부두, 갑문 또는 견고한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 ④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수입은 중앙관리청의 수입은 국고로, 지방관리청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
- ⑤ 공유수면에서의 유독물·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등을 금함.
- ⑥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필요할 때 또는 공공위해의 제거 또는 경감이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⑦ 허가의 취소·변경등으로 손해를 받은 자에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하도록 함.
- ⑧ 중앙관리청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지방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⑨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함.

공포번호	1632	공포일자	1964. 5. 2.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1962. 6. 18., 법률 제1092호)으로 경제기획원의 국토건설청이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1746	공포일자	1966. 2. 23.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 ① 수면이나 수류로도 볼 수 없어 관례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빈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함.

- ② 공유수면의 관리청별 관리수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미납점용료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 ③ 공유수면 내의 무단공작물 및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의 시설물 기타의 공작물등은 무상으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5338	공포일자	1997. 4. 10.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등을 위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감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5453	공포일자	1997. 12. 13.	제 명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	------	---------------	-----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가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공포번호	5914	공포일자 시 행 일	1999. 2. 8. 1999. 8. 9.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전문개정]

공유수면의 점·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①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조정
- ② 포락지·간석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제방축조 또는 토지의 원상을 복구토록 함
- ③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관광호텔등 건축물의 설치 허용
- ④ 부두·방파제 등 공작물설치는 공사의 시공에 따른 안전, 환경피해 최소화 등 공유수면관리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제도를 도입함
- ⑤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업자도 공유수면점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
- ⑥ 공유수면 무단점·사용자에게는 점·사용료의 120퍼센트를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1천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⑦ 전복·침몰·방치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하거나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7481	공포일자 시행일	2005. 3. 31. 2005. 10. 1.	제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 중 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지역 및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감면대상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8039	공포일자	2006. 10. 4.	제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공무원의 성명, 조사 목적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8819	공포일자 시행일	2007. 12. 27. 2008. 6. 28.	제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외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9551	공포일자 시행일	2009. 3. 25.	제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에 대한 점·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9736	공포일자 시행일	2009. 5. 27.	제명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02

공유수면매립법의 제·개정 연혁

공포번호	986	공포일자	1962. 1. 2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	-----	------	--------------	-----	---------

[신규제정]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건설청장의 면허를 얻도록 함.
- ②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주무부·청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도록 함.
- ③ 조선공유수면매립령(1923년3월13일제령 제3호)을 폐지함.

공포번호	1633	공포일자	1964. 5. 2.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1962. 6. 18., 법률 제1092호)으로 국토건설관리청이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1821	공포일자	1966. 8. 3.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 ① 농림부장관이 분장하고 있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권을 건설부장관에게로 통합함.
- ② 토지개량연합회에 대한 공사대행규정을 신설함.
- ③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포번호	2411	공포일자	1972. 12. 3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현행법상으로는 건설부장관이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농경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 매립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이관하기 전에 행할 매립공사의 범위가 모호한 바, 건설부장관은 방호·방수시설의 설치를 하고 농림부장관은 개답·관개시설등의 설치를 행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행하는 농경지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3901	공포일자	1986. 12. 31.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공유수면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 ① 10년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립면허는 이 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만 하도록 함.
- ②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함.
- ③ 매립공사로 인한 손실보상대상구역이 종전에는 공유수면매립시행구역에만 한정하던 것을 직·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의 공유수면도 피해보상대상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세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 ④ 종전에는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관계없이 매립지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사업비(적정이윤 포함) 상당분만을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 우선권을 주도록 함.
- ⑤ 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5년 이내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

공포번호	5337	공포일자	1997. 4. 1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인 매립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인 매립지를 공장 등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지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 ① “공유수면”의 개념에 빈지를 포함시키고 매립지 중 빈지지역을 국가에 귀속토록 함
- ②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 국유인 잔여매립지를 매수할 경우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③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공장·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관광호텔 등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5453	공포일자	1997. 12. 13.	제 명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	------	---------------	-----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면허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공포번호	5911	공포일자 시행일자	1999. 2. 8. 1999. 8. 9.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
------	------	--------------	----------------------------	-----	--------------

[전문개정]

갯벌 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매립지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립지의 용도변경제한기간을 장기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 ②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매립예정지안에서는 당해 매립예정지의 이용에 관한 어업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사업 등에 있어 불필요한 보상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③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함으로써 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공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④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도록 함.
- ⑤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인가 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⑥ 종전에는 준공인가 후 5년 이내에는 매립한 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립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강화하여 **준공인가후 20년동안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기목적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7482	공포일자 시행일자	2005. 3. 31. 2005. 10. 1.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정항만구역안 외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법 제9조)
「항만법」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각종 사무는 종전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되, 그 외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나. 매립목적변경 확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립목적변경이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법 제38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매립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8820	공포일자 시행일자	2008. 6. 28. 2008. 6. 28.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
------	------	--------------	------------------------------	-----	--------------

[일부개정]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영(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골자

공포번호	10272	공포일자 시행일자	2010. 4. 15. 2010. 10. 16.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	-------------------------------	-----	---------------------

[제 정]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사용기간을 30년·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0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개정 연혁

공포번호	국토해양부령 474호	공포일자	2012. 6. 14.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류 중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청구역의 경우에는 해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입기한을 납입고지일부터 15일에서 20일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도록 하여 점용·사용료 납부 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전 신고를 이전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정산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가. 제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로 개정
 - 나.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15일에서 20일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 다. 제14조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개정
 - 라.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제30조제1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개정
 - 바. 제3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사.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로 개정
 - 아.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 별지 제23호서식 제4호 중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으로 변경
 차. 별지 제29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28일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24155호	공포일자	2012. 10. 29.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제15조제1항 전단 중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개정
-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개정

공포번호	11690	공포일자	2013. 3. 23.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재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대통령령 25050호	공포일자	2013. 12. 3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2014년 1월 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매립면허 신청: 2014년 1월 1일

공포번호	12248	공포일자	2014. 1. 14.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도로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내용

-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공포번호	12476	공포일자	2014. 3. 18.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	--------------	-----	---------------------

[일부개정]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 제6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127호	공포일자	2014. 12. 31.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 2015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2015년 1월 1일

공포번호	대통령령 26132호	공포일자	2015. 3. 3.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공포번호	13385	공포일자	2015. 6. 22.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내용

-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공포번호	대통령령 27245호	공포일자	2016. 6. 21.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가.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제33조제5호 중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공포번호	대통령령 27299호	공포일자	2016. 6. 30.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타법개정]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개정내용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태료 금액란 및 같은 표 제10호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0만원
100만원

제6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194호	공포일자	2016. 6. 30.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타법개정]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 개정내용

별표 2 제3호나목 중 "월액 10만 원"을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 원"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공포번호	법률 14480호	공포일자	2016. 12. 27.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타법개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개정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공포번호	법률 14503호	공포일자	2016. 12. 27.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8조"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 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로 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27784호	공포일자	2017. 1. 1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경우 그 기간만료의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연장 사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에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20조제4항 중 "1개월"을 "20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반환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217호	공포일자	2017. 1. 2.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타법개정]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개정내용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 2017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매립면허 신청: 2017년 1월 1일
5. 제30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신고 등: 2017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2017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219호	공포일자	2017. 1. 5.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지적도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케이블카 등의 설치로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제11조제4항 중 "15일에서 20일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는 기한으로 한다"를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로,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산정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별표 2 제10호의 구분란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68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1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8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한다.

공포번호	법률 14726호	공포일자	2017. 3. 21.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필요한 인수·배수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 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필요한 인수·배수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제11조제3호)
- 다.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 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13조제7항 신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마. 분할 준공검사 신청 허용(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 마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함
- 사.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工區)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아.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39조의2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 구체화(제56조제1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 벌칙 규정(제64조제1호의2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수문, 건축물"을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즉시 그 사실을"을 "그 사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을 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광역자치단체"를 "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을 "광역시장·도지사는"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점용료·사용료를"을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로 한다.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에"를 "구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제4항 중 "그 매립지"를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으로,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제46조(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를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제4항"을 각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9조제1항 각호"를 "제39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 중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6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6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482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림부장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농림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매립면허를 한 후 주된 매립목적이 농업 및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이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승계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면허에 관한 모든 서류(매립예정지 또는 매립지 일부의 매립목적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이 법 제2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28241호	공포일자	2017. 8. 9.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종묘생산어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비율과 동일하게 그 점용료·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에게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가 각각 이전되거나 상속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등재"를 각각 "기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0호까지"를 "제10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제34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이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매립면허취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매립면허취득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매립면허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시·군"을 각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국가관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관리항"을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국가관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매립구역에서의"를 "매립구역에서의"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관리항"을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개정 2017. 8.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100만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100만 원
다.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100만 원
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200만 원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100만 원
바.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100만 원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0만 원
아.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100만 원
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100만 원
차.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100만 원
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1호	300만 원

공포번호	대통령령 28333호	공포일자	2017. 9. 19.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면허관청이 매립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26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요율, 징수 절차 및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회의의 개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15조의2 신설)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까지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가산금의 요율 및 징수 절차 등을 정함.

나.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48조의2 신설)

매립면허관청이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회의의 회의에서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회의의 개최 절차 등을 정함.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257호	공포일자	2017. 9. 22.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26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관한 준공검사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자는"을 "자는 점용·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의 산정방식(단위 : 연간)란의 가목 본문 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받아 고시한"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란의 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본문 중 "관할 시·군·구"를 "관할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구"로, "인접한 시·군·구"를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로, "시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으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받아"를 "거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 방법란 제3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 사항란 제2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영 제12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제29조"로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공유수면관리청"을 각각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 서류란 제4호 중 "영 제12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 서류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각각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단서 중 "있다"를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

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8일"을 "18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의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법 제3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4항"으로,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매립면허관청의 장"을 "매립면허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공포번호	법률 16149호	공포일자	2018. 12. 31.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1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2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29879호	공포일자	2019. 6. 18.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49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종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6조제1항제3호 중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저감대책"을 "영향을 줄이는 대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제12호"를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제25조제6호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이나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으로 한다.

공포번호	법률 16501호	공포일자	2019. 8. 2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권리·의무 이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상속을 신고한 자"를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신고 받은 경우"를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받거나"를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거나(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5항에"를 "같은 조 제6항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를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다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379호	공포일자	2019. 12. 3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바닷모래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해양환경 훼손 및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골재채취 원가 기준에서 인근 시·군·구 등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 기준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월할(月割)과 일할(日割) 계산을 함께 적용하던 것을 일할 계산 방식만을 따르도록 하여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15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단서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골재채취 단지관리자가"를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을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별표 2 비고란 제3호 중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를 "일할(日割)로"로 한다.

공포번호	법률 제16898호	공포일자	2020. 1. 29.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 관련 각종 신고, 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을 높여주는 것임.

◇ 개정내용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0852호	공포일자	2020. 7. 14.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 관련 각종 신고, 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8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위임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제74조제1항제4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원상회복의 의무면제, 시설 그 밖의 물건의"를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와 면제 여부의 통지, 매립지·건축물·시설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100만 원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2호	100만 원
다.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3호	100만 원
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	160만 원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5호	100만 원
바.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220만 원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500만 원
아.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220만 원
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170만 원
차.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2호	170만 원
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3호	210만 원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포번호	법률 제18538호	공포일자	2021. 11. 3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서 「하천법」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포번호	법률 제18694호	공포일자	2021. 11. 3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을 위해 광범위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인근 해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같이 영해 외측의 먼 바다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렇듯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최대 30년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인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8조제7항 중 "경우에는 점용"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관련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2514호	공포일자	2022. 2. 28.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사유에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38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재해 등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징수하려는 때"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관리청에 제출하여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③ 법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15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2761호	공포일자	2022. 7. 4.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94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고 및 열람과 의견조사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고 및 열람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및 내용 등을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견조사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고 및 열람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3. 그 밖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을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의"로, "대하여"를 "관한"으로 한다.

제73조제2호 중 "해당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를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를 "이 영 제10조제2항·제5항에 따른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과 변경 협의 또는 변경 승인,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제555호	공포일자	2022. 7. 5.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94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신청서 서식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걸리는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의 민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용어를 정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인용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4조제2항제9호나목 중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로 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서(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으로, "신청자 중 추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를 "신청자 중에서 추천하여 지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하여"로 한다.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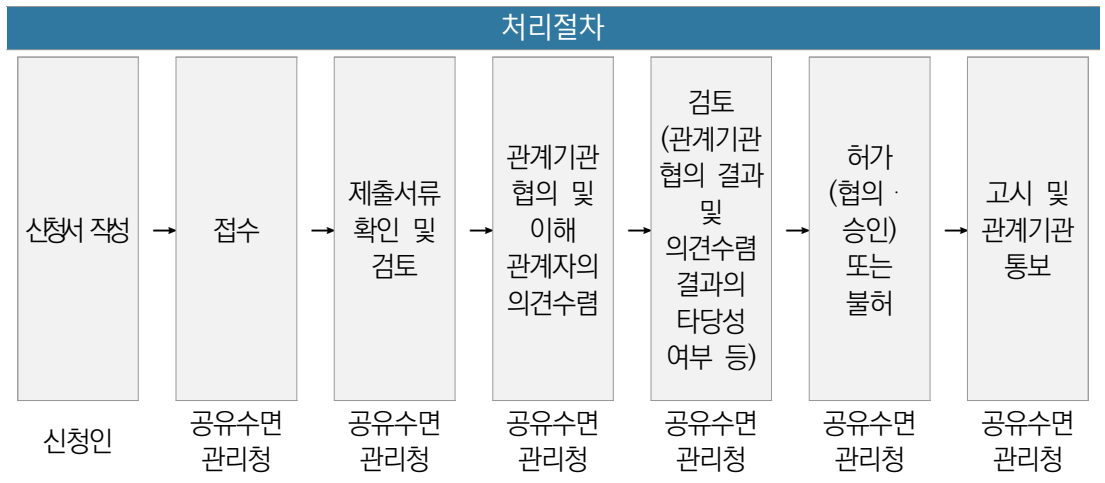
제33조제3항 중 "하였을 때"를 "했을 때"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를 "감정평가법인등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재공고하였음에도"를 "재공고에도"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를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였을 때"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9호나목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걸리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및 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포번호	법률 제19133호	공포일자	2022. 12. 27.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협의·승인을 할 때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개정내용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2호"를 "제1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2조제1호"를 "제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3540호	공포일자	2023. 6. 13.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협의·승인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시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재해의 발생 가능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점용·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2.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호"를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4533호	공포일자	2024. 5. 28.	제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1조 생략

제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납부할 점용료·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할 점용료 · 사용료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10/100+(증가율-10/100)×3/20}]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115/1,000+(증가율-20/100)×1/20}]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13/100+(증가율-50/100)×3/100}]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145/1,000+(증가율-100/100)×3/200}]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16/100+(증가율-200/100)×1/200}]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175/1,000+(증가율-500/100)×5/2,000}]

제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공포번호	법률 제21051호	공포일자	2025. 9. 16.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 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인 원상회복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 ·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21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이행강제금)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단서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2026년 03월 인쇄

2026년 03월 발행

발행인 : 해양수산부

편집인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장경일 서기관, 윤희수 사무관, 강지영 주무관

발행처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Tel : (051) 773-5265, 5266, 5268
Fax : (051) 773-5299

인쇄처 : (주)비전테크시스템즈 Tel : (02) 3432 7132
